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 방향 토론

조석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영재교육연구총괄팀장)

영재교육진흥법의 통과에 따라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일이 적어도 올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되어야 할 시급한 일이 되었다. 교육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마련해야 하는 주무 부처로서 이미 시행령 제정 관련 영재교육 제도와 운영방안에 관한 정책연구를 종료하였고, 현재 제안된 시행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중이다. 이번에 한국영재학회를 중심으로 시행령 제정 방향을 논의하게 된 것은 다양한 이해 집단이 다양한 시각에서 건전한 논의를 할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라고 본다. 본인은 영재교육진흥법의 초안 작성부터 구체적인 시행방안 제안까지 모든 작업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만을 해 온 사람으로서 토론에 임하게 되었다. 발표 논문에 대해서 토론시간의 제한을 고려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지적하고자 한다.

1. 정책 혼선과 교육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영재교육 시스템

가. 문제점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 64개의 영재학교 설립 또는 지정 운영

발표 논문에서는 과학기술부가 시행해 오던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는 입장에서 제안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우리나라에서 영재교육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다. 다른 어떤 교육문제 보다도 온 국민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을 요한다. 그러나, 발표 논문에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한 혼적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외면해려 한다는 느낌이다.

제안된 영재학교 설립 운영 방안의 첫 번째 문제는 지나치게 영재학교의 수가 많다는 점이다. 4개 분야에서 시·도별로 1개교씩 영재학교를 설립 운영하게되면 전국적으로 64개교가 되어, 중복적인 예산투자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는 평준화 정책을 깨고, 과학고가 겪는 대입 진로 문제를 증폭시킬 것이다. 과학고등학교는 학교수가 4개 정도일 때는 영재교육이 잘 이루어졌었다. 그 수가 16개로 늘어나면서 대학과의 연계 문제가 발생했다. 이 문제는 아직도 미결인 채로 남아있다. 발표 논문대로 영재학교를 설립한다면, 대학과의 연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고, 나아가 영재학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둘째, 기존의 학교들 중 영재교육을 실시할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학교를 영재학교로 지정 전환해 주는 방안이 철저히 모색되지 않았다.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중 일부 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전환하거나 새로이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립, 공립, 사립 학교 중 설립 주체에 관계없이 영재학교로서 지정 전환할 수 있도록 한데 비해, 이 발표문에서는 과학고등학교의 경우만 전환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재교육 실시 여건을 잘 갖춘 사립 학교가 영재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영재학교로서의 지정을 국가에 신청할 때, 이를 거부할 명분을 찾기는 어려운데, 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영재학교는 최우수 소수 영재를 대상으로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영재교육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영재학교 졸업생이라면 적어도 대입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야 하는데, 영재학교 졸업생의 대입 특별전형이라는 극약처방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므로, 영재교육 시행방안에서는 영재학교를 몇 개 세울 것인가 보다는 영재학교가 갖추어야 할 여건과 운영방안에 대해 오히려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세째, 교육부, 과기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어느 부처라도 학교를 운영하게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 대부분의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교육부가 일반 교육 뿐 아니라 노동인력, 과학기술인력 양성까지도 모두 통합해 나갔다. 최근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교육부로 집중시키는 교육 부총리제가 거론되고 있다. 여러 정부부처가 교육을 담당할 때,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 부처간 대화가 전혀 필요없다고 상정하기 어렵고, 대화와 협력이 필요할 때, 그것이 원활히 이루어지리라는 보장도 없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이동, 일반 학교로 전출·입할 때의 적용 기준에 대한 합의 부족 등도 예상 가능한 문제들이다. 과학기술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과학영재교육센터와 같이 입학, 졸업, 이수인정에 관계없이 영재교육을 실시할 때와는 다른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발생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부나 문화관광부에 소속되어 있는 영재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어렵거나, 원하는 이수인정을 받을 수 없거나, 다른 학교급 또는 학교와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고립될 수도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영재교육의 노하우가 충분하지 않다. 여러 정부 부처가 총 64개의 영재학교를 설립 운영할 때, 당장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학부모들은 어떤 행동양식을 보여 어떤 문제와 갈등과 혼선을 빚을지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사소통이 어렵고 비대한 정부조직 운영 - 68개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설치 운영

발표 논문에서는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4개 분야별로 두도록 제안하고 있다. 자동적으로 시·도위원회도 분야별로 둔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시·도 영재교육위원회가 $16 \times 4 = 64$ 개, 중앙영재교육위원회가 4개 운영되어야 한다. 영재교육에 대한 심의의결기구가 전국적으로 총 68개를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발표논문 속에서 유관정부 부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교육’ 관련 부처로 해석하면 교육부에 68개 운영위원회가 소속되어야 한다. ‘내용’ 영역별로 관련 부처를 본다면 과학 영재교육진흥위원회는 과학기술부 소속이 되어야 하고, 체육, 예술, 인문사회 분야 위원회는 문화관광부 소속이 되어야 한다. 즉, 과학기술부에 17개 위원회를, 문화관광부에 51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이런 방안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러 부처가 각기 다른 정책 방안을 제시하게 되면,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나아가 국가의 임무 중 하나인 영재교육 종합 발전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기구로 4개의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총괄하는 상위위원회가 하나 더 있어야 하지만, 법적 기반이 없다. 그러므로 예산을 중복적으로 사용해도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다.

예산의 중복투자와 질낮은 연구 산출물이 불가피 - 4개 국립영재교육연구원 설립 운영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는 영재교육연구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영재교육의 분야별로 4개 분야에서 국가수준의 영재교육연구원을 설립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를 영역별로 다르게 해야하는 부분이 있지만, 공통된 연구가 오히려 더 많다. 세계적으로 영재교육연구원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현재에도 없지만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영재교육연구원 설립 운영 방안은 예산, 정부조직의 효율화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에는 영재교육에 관한 전문가의 수가 너무 적다. 전문가도 적고, 연구원의 수는 적은데 영재교육연구원만 많이 설립되면, 그런 영재교육연구원에서 나온 연구 산출물의 질은 낮을 수 밖에 없다.

나. 개선 방안

이미 영재교육은 교육부가 주무 부처로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처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영재교육 가장 효율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려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영재교육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충분히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는 경향이 있었다.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된 후에도 교육부가 여전히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가질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또 교육부가 예산 확보에 여전히 어려움을 갖는다는 가정하에, 다른 부처에서 영재교육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하여 영재교육진흥위원회 및 영재교육연구원, 영재학교 운영에 대해 다른 부처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영역의 영재들이 간학문적 접근 방식으로 학습하는 국립영재학교 1개교 설립

“지식의 혁명은 학문의 영역사이에서 일어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최근 선진외국에서의 영재교육은 간학문적 접근방법을 적용하는 경향이 벌써 20년 전부터 강하게

일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1980년대부터 와이즈만 과학연구소에서 과학과 예술의 만남을 통한 영재교육을 시도해오다가, 1990년대에는 세계적인 영재교육 권위자들이 모여서 과학예술고등학교 (Israel Arts and Science Academy)를 설립 운영하여,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가 영재학교를 새로 설립 운영한다면, 학문의 영역사이에서 지식의 혁명을 일으킬 만한 창의적 지식 생산능력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도록 과학, 예술, 인문사회 영역의 영재들이 한 캠퍼스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 즉, 영역별로 영재학교를 설치 운영하기 보다는 여러 분야의 영재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학교에서 영재들은 각자의 재능 분야를 최대로 계발해 나가는 동시에 다른 영역의 영재들과 상호협동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하고, 특별활동을 격려하며, 협동학습을 조장함으로써, 창의적 지식 생산능력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산자의 대표로 예를 든 “쥬라기 공원”은 과학과 예술의 만남으로 가능했다. 분야별로 영재학교를 설립한다면,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창의적 인재 양성은 어렵다. 여러 영역의 영재들이 모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학교라야 스티븐 스필버그는 양성될 가능성성이 더 높아진다.

기존의 학교 중에서 영재교육을 할 만한 여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영재학교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여전히 영재학교의 수는 적어야 하지만, 영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엄격하게 마련하여 충분히 그 여건을 갖추었다면 영재학교로 전환지정해 주고, 일정 기간마다 심사를 다시 하여 영재학교로서의 자격을 계속 유지 또는 박탈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간학문적 접근방식을 적용하는 국립영재학교 1개를 신설하고, 기존의 학교 중에서 과학, 예술, 체육, 인문사회 영역의 영재를 양성하는 영역별 영재학교가 동시에 존재하는 영재교육 시스템이 될 것이다.

여러 부처가 참여하여 심의 의결하는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설치 운영

영재교육진흥위원회는 교육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은 영재교육을 하고자 하는 관련 부처에서 각각 2-3명씩 추천하고, 학부모,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위원장을 호선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Global Standard를 적용하여 영재

교육진흥위원회 위원에 국제적인 영재교육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이렇게 각 부처의 영재교육관련 정책결정자들이 모두 참여하게 하면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국가적으로 종합적인 영재교육 정책이 마련되고, 영역간 부처간 상호작용도 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으면서도 방만하지 않은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바람직하다.

영재교육연구 역량을 최대로 결집시킨 역동적인 국립영재교육연구원 운영

국가적 수준의 영재교육연구원은 이미 영재교육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나 조직을 최대로 활용하여 국립영재교육연구원을 설립 운영하면서, 국내의 영재교육관련 연구원들을 한 군데로 결집시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립영재교육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국가수준에서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미국처럼 큰 나라에도 국립영재교육연구원은 1개에 불과하다.

영재교육 분야별로 독립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공동으로 협력하여 연구해야 할 영역이 더 많다. 예를 들면, 영재들의 창의성계발에 필요한 영재교육과정, 영재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영재판별도구 등에서는 과학, 예술, 인문사회 영역 중 어느 영역이든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원칙들이 있다. 더구나 영재교육이 간 학문적인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학문의 영역사이에서 혁명을 일으킬 창의적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영재교육은 여러 분야가 상호 유기적이며 역동적인 관계를 갖고 운영되어 한다. 따라서, 영재교육연구원내에 전국의 영재교육 분야별 전문가를 결집시켜, 그 전문가들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다양한 형태로 팀을 구성 운영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창의적 지식 생산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영재교육이 더 잘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국립영재교육연구원은 대학의 교수들과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런 운영 방식이 연구원의 예산 활용, 전문가 활용, 산출물의 질 등의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 물론 영재교육에 관심이 있는 각 대학, 영재교육센터 등은 얼마든지 영재교육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들은 중앙의 영재교육연구원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연구를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과학영재교육원의 독점적인 설치 운영 방안

문제점: 과학 분야의 영재교육원 설립을 제한

영재교육진흥법 제정의 기본 취지는 영재교육을 진흥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진흥법에서는 극소수의 최고급 영재를 위해서 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영재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진흥법에서는 영재교육원은 학교가 아닌 대학, 교육청, 정부출연기관, 연구소, 공익법인 등이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많은 영재교육원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도권 밖에서 제공하면서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발표논문에서는 영재교육진흥법의 이런 취지와는 정반대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재교육원 중 과학 분야에서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대학 부설 과학 영재교육센터를 영재교육원으로 대체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더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방안은 영재교육 ‘진흥’법에 대한 시행령으로서는 옳지 않다. 대학부설 과학 영재교육센터 외의 다른 기관에서 과학영재교육을 실시할 때 우려되는 문제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다.

제시된 방안대로라면 영재교육원의 경우, 과학 영재교육은 각 시·도 별로 대학부설 과학 영재교육센터가 독점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특정 운영주체가 독점하는 영재교육체제는 당분간은 대학부설 과학 영재교육센터가 독점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영재교육진흥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상호경쟁적이며 상호보완적인 영재교육원의 설립 운영이 되어야

영재교육원은 각 영역의 영재들을 다양한 주체가 설립 운영할 수 있을 때, 상호 경쟁적이며 상보적인 관계로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각 교육청, 정부출연기관, 연구소, 공익법인 등도 영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과 여건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과학 영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을 때, 과학 영재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영재교육원을 다양한 주체가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되면, 이들 중에는 과학 영재교육의 저변확대 기능을 하는 기관도 있을 것이고, 대단히 뛰

어난 영재의 잠재력 최대 계발이라는 기능을 하는 기관도 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이며, 같은 분야의 영재교육을 하는 기관끼리는 상호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각 기관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영재교육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각 시도 교육청은 과학영재교육센터가 운영되기 전인 1980년대 후반부터 교육청 산하에 과학교육원 또는 교육과학연구원을 두고 과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1994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는 전국의 64%에 해당하는 교육청이 과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지금까지 많은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이미 부산교육청에서도 과학영재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기관이 갖고있는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영재교육진흥법과 시행방안간의 일관성 미흡

발표 논문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시행 방안은 영재교육진흥법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 재고해보아야 한다. 또 발표 내용안에서도 일관성이 부족하게 기술된 부분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운영에서

영재교육진흥법 제4조에 ‘교육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시·도 교육청에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발표문에서는 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과학, 체육, 예술, 인문사회 분야별로 유관 정부부처에 둔다고 제시하고 있다. 유관정부부처를 국립 영재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교육부, 과기부 등)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아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도 교육부, 과기부 등에 둘 수 있다고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영재교육 대상 분야 선정에서

영재교육진흥법 제5조에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일반 지능, 특수 학문 적성, 창의적 사고 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기타 특별한 재

'능'을 들고 있다. 그러나, 발표 논문에서는 영재교육 대상 분야를 과학, 예술, 체육, 인문사회로 나누고 있다. 이로써, 아직 특정 분야에 재능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나이 어린 영재들은 영재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인상이다.

다. 영재학급의 설치 운영에서

영재교육진흥법 제7조에 영재학급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각급학교에 교과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재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위학교에서도 영재학급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교육청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라. 영재교육원의 설치 운영에서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에 “시·도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기술, 예술·체육 등과 관련있는 공익법인은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영재교육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주체로 시·도교육청을 포함시킨 데 비해, 이 발표문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원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제안을 하고 있다. 또한 발표 논문에서는 영재교육의 기본 방향에서 교육청 별로(p.3)으로 영재학급을 편성 운영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가, 시행령 제정 방향에서는 시도군구 교육청 또는 각급 학교에서 영재학생을 위한 학급을 운영하는 것 (p.11)으로 제시되어 있다.

마. 영재교육연구원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영재교육진흥법 제18조에서는 “국가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발표문에서는 이를 위해서 정부출연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영재교육연구회를 두고, 영재교육연구회 산하에 4개 분야의 영재교육연구원을 두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또 영재교육연구원이 정부출연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 운영된다면, 그 소속은 당연히 총리실인데, 각 유관 정부 부처 소속이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바. 대학에서의 영재교육에 대해

영재교육진흥법에서는 대학에서의 영재교육을 다루고 있지 않은 데 비해, 이 발표문에서는 대학에서의 영재교육도 포함시키고 있다. 대학에서의 영재교육은 각 대학에서의 정책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항으로서 이 시행령 제정에 관한 발표문에서 다루기는 적절치 않은 사항이라고 보인다. 또 영재교육의 기본 방향(p.4)이나 영재교육체계도(p.5)에서는 대학에서의 영재교육이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과제에서 대학에서의 영재교육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 영재학교의 운영에 관해

발표 논문 속에서 영재학교를 어떤 학교급에서 운영하고자 하는지가 잘 나타나있지 않고, 일관성이 부족하다. 영재교육체계도(p.5)에서는 영재학교가 고등학교와 대학교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으나,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운영에서는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영재학교를 운영하는 것(p.11)으로 제안되어 있다. 영재학교의 교육대상으로 중·고등학생이라고 할 때, 입학대상 학생의 나이에 제한을 두는 듯한 인상을 준다. 교육과정 수준과 학생의 나이 수준을 현재와 같이 묶어서 운영하는 방안은 영재학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